

2013년 아동정책현안 토론회

2013. 4. 5. (금) 15:00, 대회의실

아동복지정책 현안과 정책과제 토론회

한국보건사회연구원

토론회 순서

시간		순서
15:00 ~ 15:20	20"	내빈소개 (사회: 김미숙 연구위원) 보사연 아동정책 연구현황 및 연구진 소개
15:20 ~ 15:30	10"	보사연 최병호 원장님 인사말씀
15:30 ~ 15:42	60" (각12")	현안1: 숙명여대 안재진 교수 토론
15:42 ~ 15:54		현안2: 울산대 오승환 교수 토론
15:54 ~ 16:06		현안3: 가톨릭대 이상균 교수 토론
16:06 ~ 16:18		현안4: 이화여대 정익중 교수 토론
16:18 ~ 16:30		현안5: 서울신대 황옥경 교수 토론
16:30 ~ 17:00	30"	전체 토론 및 마무리

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정책 연구 현황	1
김미숙 연구위원(한국보건사회연구원)	
현안1: 입양특례법 개정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	7
안재진 교수(숙명여자대학교)	
현안2: 아동분야 현안 및 정책과제	13
오승환 교수(울산대학교)	
현안3: 아동복지정책의 현안과 정책과제	17
이상균 교수(가톨릭대학교)	
현안4: 아동정책의 현안과 정책과제	21
정익중 교수(이화여자대학교)	
현안5:	27
황옥경 교수(서울신학대학교, 한국아동권리학회 학회장)	

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정책 연구 현황

(한국보건사회연구원, 김미숙)

1. 아동정책분야 주요 연구실적

-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아동정책 및 복지 관련 연구를 다각도로 수행해왔음.
- 2007년 가족아동복지팀 설치 이전 :
 - 주로 가족정책, 인구정책, 사회복지의 맥락 안에서 아동문제를 다루어왔고, 영유아 보육 주제도 연구해 옴.
 - * 아동학대문제, 입양아동문제, 아동복지시설 평가 등과 함께 영유아 보육관련 정책 관련 연구를 수행함.
- 2007년부터 가족아동복지팀이 조직되어, 아동연구를 특화하여 수행
 - 기본과제, 일반과제, 수탁과제 등 다양한 형태의 과제를 연구하되, 아동정책 전반, 학교폭력, 방과후서비스, 아동복지교사, 다문화가족 아동, 아동복지 전달체계, 아동복지수요와 급현황, 아동 및 영유아 분야 일자리, 빈곤아동, 결식아동 등을 연구해옴.
 - 그동안 진행하였던 주요 연구과제는 다음 <표 1>과 같음.
 - 이 밖에도 입양, 아동권리협약, 아동복지시설, 아동학대, 미혼모 지원 등의 연구를 수행함.

<표 1> 아동정책 분야 수행 과제

연구과제명	지원기관	연구기간 (부터-까지)
아동복지지출 실태 및 적정 아동복지지출 규모 추계	한국보건사회연구원	2011.01.01~2011.11.30
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전략 : 영유아돌봄 및 방과후서비스를 중심으로	한국보건사회연구원	2011.01.01~2011.12.31
선진국의 아동사례관리체계 비교연구: 영국, 미국, 뉴질랜드 사례를 중심으로	한국보건사회연구원	2011.01.01~2011.12.31
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응실태 및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방안 연구	한국보건사회연구원	2011.01.01~2011.12.31
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전략 : 아동분야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	한국보건사회연구원	2011.01.01~2011.12.31
아이 낳고 키우고 싶은 고창만들기	고창군청	2010.03.26~2011.02.15
아동복지정책 유형과 효과성 국제비교연구	한국보건사회연구원	2010.01.01~2010.12.31
2010년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평가지표 체 계개발 및 성과분석연구	아동복지교사중앙지원센터	2010.08.01~2010.12.31
아동청소년 복지수요에 기반한 공급체계 재편방안연구	한국보건사회연구원	2009.01.01~2009.12.31
능동적복지 확충을 위한 복지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	보건복지가족부	2009.02.20~2009.12.18
지역사회의 다문화가족 교육지원 인프라현황과 과제	한국교육개발원	2009.03.17~2009.10.31
방과후 통합운영모델 및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	아동복지교사중앙지원센터	2009.05.01~2009.10.31
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한 국내외 이행실태 연구	보건복지가족부	2008.10.16~2009.03.15
2008년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평가	함께일하는재단(아동복지교사중앙지원센터)	2008.10.01~2009.03.31
아동·청소년복지수요추계연구 I	한국보건사회연구원	2008.03.01~2008.12.31
한국아동빈곤 실태와 빈곤아동 지원방안	한국보건사회연구원	2007.03.01~2007.12.31
아동발달지원계좌(CDA)사업 관리 운영	보건복지부	2007.02.16~2007.12.31
빈곤층 아동급식지원제도 실태조사	국가인권위원회	2007.05.10~2007.11.9
정부내 바람직한 아동정책 수행체계 개발	보건복지부	2006.07.14~2007.02.13

2. 주요 연구인력

□ 현재 아동복지 및 정책분야 연구는 사회서비스실에서 담당하고 있음.

○ 연구인력은 다음 표와 같음.

<표 2>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정책 담당 인력

직위·직급	성명	연구부문	수행과제 현황
연구위원	김미숙	• 아동 복지 • 사회서비스	책임) 아동보호체계 연계성 제고방안 연구 참여) 사회보장5개년 계획 수립(수탁)
부연구위원	정은희	• 아동 빈곤 • 양육 및 보육	책임) 한국 아동빈곤의 특성 참여) 사회보장5개년 계획 수립(수탁)
전문연구원	이주연	• 아동 복지 • 사회서비스	육아휴직
전문연구원	김효진	• 아동 권리 • 입양	육아휴직 (5월 복직 예정)
연구원	하태정	• 아동 빈곤 • 아동 정책	
	5명		

3. 아동정책분야 문제와 중장기 연구주제

1. 아동정책분야 현안

□ 낮은 아동 삶의 질

- UNICEF(2007)에서 실시한 아동 삶의 질 국가간 비교를 통해 분석된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질 수준은 객관적인 영역에서는 양호하나, 주관적인 복지에 있어서는 최하위 기록
 - － 6개 영역(물질적 복지, 건강과 안전, 교육복지, 가족 및 친구관계, 행동과 위험, 주관적 복지) 중 대부분은 상위권이지만, 삶의 만족도와

복지감을 나타내는 ‘주관적 복지감’ 영역은 최하위를 기록함. 그만큼 우리나라의 아동은 아동으로서의 삶의 질을 누리지 못하고, 정서적인 문제와 인격의 고갈을 경험함.

□ **요보호아동 중심의 지원 위주**

-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은 시설보호, 가정보호 등과 같은 요보호아동을 위한 소극적 복지정책이 주류였고, 일반아동을 위해서는 학대아동 보호,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등 매우 제한적인 복지만이 제공됨.
- 더구나 우리나라 아동복지예산은 노인, 영유아, 장애인 다른 대상에 비해서 매우 낮고, 중앙 및 지방정부의 복지예산을 합하여 추계한 아동 1인당 복지비는 연 14만원에 불과함.
- 사후대처적, 분절적·단편적 정책에서 벗어나고, 취약계층 중심의 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모든 아동을 포괄할 수 있는 종합적·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함.

□ **아동을 위한 독자적 전달체계 부재**

- 아동정책은 중앙-시도-시군구-읍면동에 이르는 행정체계에서 독자적인 전달체계가 부재함.
- 기초단체의 경우 가족정책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제공됨. 아동정책의 경우에도 이를 총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함.

□ **아동정책의 파편화로 인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행에 한계**

- 입양, 시설, 가정위탁, 방과후 돌봄, 학대아동보호와 관련한 정책 및 전달체간의 연계가 부족하므로, 아동보호체계의 연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함.

□ 아동 욕구를 반영하는 정책 부족

- 아동복지시설, 입양 및 가정위탁과 관련된 정책에서 개별 아동의 상황 및 욕구에 맞는 정책이 필요함.

□ 아동과 관련한 통계의 부족으로 인한 근거기반의 정책형성이 어려움

- 특히 빈곤아동에 대한 국가수준의 정확한 실태조사는 전무한 바, 아동에 대한 전반적인 생활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근거에 기반한 정책형성 필요
 - 아동 욕구의 다양화, 새로운 아동복지 패러다임의 필요성 대두, 보편적 복지에의 사회적 관심의 증대 등과 같은 정책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아동복지정책 분야에서도 이러한 환경적 변화를 반영하는 중장기 정책이 요구됨.

2. 중장기 연구과제 (안)

□ 상기의 현안문제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과제를 도출

<표 3> 중장기 아동정책분야 연구과제(안)

구 분	2013	2014	2015	2016	2017
1) 아동보호체계 연계성 제고 방안 연구	○				
2) 한국 아동빈곤의 특성: 세대간 이전, 장기빈곤, 다차원적 빈곤을 중심으로	○				
3) 아동의 자산형성 지원효과분석 및 탈빈곤방안		○			
4) 통합적 아동서비스 지원체계 공고화 방안: 드림스타트 센터를 중심으로		○			
5) 아동지원사업 효과성 비교연구: 현금과 현물지원의 비교를 중심으로			○		
6)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			○		
7)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복지역량 강화방안 연구				○	
8) 입양아동정책 선진화 방안 연구					○
9) 대상별 복지형평성 고찰: 영유아, 아동, 청소년, 노인을 중심으로					○

현안1

입양특례법 개정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

(숙명여자대학교, 안재진)

1. 현황 및 문제점

□ 개정 입양특례법의 내용(2011.8. 개정, 2012.8. 시행)

○ 개정이유

- 아동입양의 절차가 아동의 복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의 관리·감독을 강화
- 최선의 아동 보호는 출신가정과 출신국가 내에서 양육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 패러다임으로 국가 입양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

○ 주요 개정사항

- 국내외 입양 모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도록 명시함.
- 입양숙려제 도입: 아동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난 후 입양동의가 가능
- 친생부모에게 입양 전 양육에 관한 충분한 상담 및 양육정보 제공
- 입양인에게 자신에 대한 입양정보접근권 부여
- 국내입양의 우선추진 의무화

□ 입양특례법 개정에 따른 문제

○ 친생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 요구

- 법원의 입양허가 요건 중 하나로 친생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
- 청소년 미혼모 대부분이 출생신고를 꺼리기 때문에 영아유기 증가

※ 경찰청에 따르면 영아유기건수가 2009년 52명, 2010년 69명, 2011년 127명, 2012년 139건으로 증가. 특히 지난해 139건 가운데 62건은 1~7월, 나머지 77건은 8~12월

발생해서 입양특례법 개정 후 영아유기 증가 가능성

- 입양특례법 시행 전 입양기관에 입소한 아동의 경우 사실상 출생신고가 불가능해 입양될 수 있는 길이 막힘(개정법의 소급적용 문제)

○ 입양아동의 대기기간 증가

- 법원에 서류 접수 후 입양허가가 나기까지 최소 4~5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, 이 기간 동안 입양대상 아동의 돌봄에 어려움 발생
- 입양대기기간이 길어지면서 아동과 입양부모 간에 안정된 애착관계 형성에 어려움.

○ 국내입양우선추진제로 인해 장애아동의 국외입양에 어려움

- 입양아동이 국내에서 입양가정을 찾기 위한 노력을 5개월 간 한 후 국외입양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됨에 따라, 사실상 국내입양이 어려운 장애아동 등의 국외입양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옴.

○ 입양숙려제 도입으로 인한 아동돌봄의 공백 발생

- 입양동의를 출산 후 7일 이후에 하도록 규정된 반면, 출산 후 병원에 머무르는 기간은 3일 남짓으로 아동돌봄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
- 미혼모 시설에 입소하고자 해도 출생신고가 된 아동에 대해서만 입소를 받아주기 때문에 사실상 갈 곳이 없는 미혼모 발생

□ 입양특례법 재개정 논의

- 입양특례법 개정이 도리어 영아유기를 방조하고, 아동의 신속한 입양을 가로막는 비판에 직면함에 따라, 개정법 시행 6개월 만에 입양특례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고, 입양특례법 재개정을 위한 추진위가 결성됨.

○ 발의된 입양특례법 일부 개정안

- 6세 미만 장애아동이 입양의뢰된 경우는 국내입양과 국외입양을 함께 추진하도록 함.
- 입양숙려제도의 폐기(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)
- (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) 친생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요구하는 대신 입양기관의 장이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할 수 있도록 함.

※ 이 경우 해당아동은 「민법」제781조제4항에 따른 부모를 알 수 없는 자임.

○ 입양특례법 재개정에 대한 반대의견

- 아동유기는 입양특례법 개정 이전부터 증가하고 있었으며, 개정 입양특례법에 대한 제대로 된 홍보 없이 ‘영아유기’나 ‘베이비박스’에 대해 언론매체가 집중적으로 보도함으로써, 오히려 미혼모의 영아유기를 부추기고 있음. 따라서 입양특례법 때문에 아동유기가 증가했다는 주장은 논리적 오류임.
- 청소년 한부모가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법원의 입양허가로 입양절차가 완료되면 가족관계등록부의 출산기록은 삭제되며, 별도로 ‘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’가 생성되는데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열람과 발급은 사생활보호를 위해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음.
- 아동의 출생등록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‘권리’임.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동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알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,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출생하면 병원을 통해 곧바로 출생등록이 되도록 의무화한 나라들도 있음.
- 아동유기는 입양특례법을 퇴행적으로 개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,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몇 가지 요소(파양의 경우 친생모

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동의 출산사실이 재생성 되는 문제, 아동이 성년이 되었을 때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친생모의 신원에 관한 기록을 알 수 있다든지, 의료보험 체계상 미혼모 자신의 의료기록에 출산과 치료에 관한 기록이 남는 문제 등)들을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을 손보아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임.

2. 정책과제

□ 입양특례법 개정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

- 개정 입양특례법은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보호를 국가가 개입하여 책임진다는 점, 친생부모가 숙려기간을 통해 충분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점, 국내입양이 입양아동에게 더 바람직하다는 헤이그 협약의 원칙에 따라 국내입양우선추진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 등에서 기존 입양촉진및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비해 한층 진일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.
- 현재 발생하는 문제는 입양특례법의 내용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입양법이 국내의 입양현실을 지나치게 앞서갔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음. 즉, 법-제도와 현실 간의 간극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임.
- 법/제도는 어느 정도 현실을 앞서가서 이끌어주는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으므로, 무조건 현실에 맞추어 법을 재개정하자는 논의는 부적절하며,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현실에 맞지 않는 법도 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, 재고되어야 할 것임. 결국 법-제도와 현실 간의 간극을 좁혀주는 개선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음.

○ 아동출생등록과 관련된 문제

-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입양현장의 현실을 고려한 개정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고민과 논의 필요
- 실제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입양절차가 종료된 후 삭제된다고 하더라도, 아동이 과양되거나, 입양되지 않고 양육시설 등에서 성장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음.
- 입양특례법 시행 전 입양기관에 입소한 아동의 경우 개정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도록 단서조항 필요

○ 입양아동의 대기기간 증가

- 예비입양부모가 동의하는 경우, 법원의 입양허가가 완료되기까지 입양아동을 예비입양부모가 위탁보호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방안 고려
※ 이 때, 향후 입양허가가 기각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시켜야 함.
- 일반위탁가정을 충분히 발굴하여 입양대기아동의 돌봄공백을 해소하는 방안

○ 국내입양우선추진제로 인해 장애아동의 국외입양에 어려움

- 사실상 국내입양이 어려운 장애아동의 경우, 국내입양과 국외입양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거나, 국내입양가정을 찾는 기간을 단축시키는 방안

○ 입양숙려제 도입으로 인한 아동돌봄의 공백 발생

- 입양동의는 출산 후 7일 또는 한 달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하되, 아동 배치에 관한 동의는 출산 직후에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아동유기나 아동돌봄의 공백문제를 예방할 수 있음.

현안2

아동분야 현안 및 정책과제

(울산대학교, 오승환)

1. 현황 및 문제점

□ 아동복지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

○ 아동복지재정이나 정책 등에 대한 무관심이 가장 큰 문제점

- 아동복지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의지가 없음. 단순한 보조장치로서 정책이 수행되고 있음.
- 아동파트만 국단위가 미설치되는 등 정책우선순위가 다른 분야에 비해 뒤떨어짐.

□ 아동복지정책 실시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정책중복

○ 보건복지부의 아동정책과 여성가족부의 아동정책이 상호 충돌되어 나타나고 있음

- 아동권리과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가 아동의 권리부분에 대한 대통령업무보고내용에 포함되는 등 정책중복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.

□ 아동복지전달체계의 파편성

○ 아동복지정책의 각 사업마다 상이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서비스의 파편화와 중복이 나타나고 있음.

- 지역아동센터, 아동보호전문기관, 가정위탁, 아동복지시설, 자립지원 등 개별적으로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음.
- 중앙기구에 있어서도 개별적으로 설치되는 통합적 조정이 불가능

- 지방의 아동복지전달체계에 대한 무관심과 방향성 및 구체성 누락
 -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아동과 관련된 전달체계의 구축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.
 - 시군구의 경우 아동복지전달체계의 사각지대임.

2. 향후 연구가 필요한 정책과제

□ 아동복지법의 체계화를 위한 연구

- 현행 아동복지법의 보완과 아동보호체계 확대를 위해 법률 개정의 필요성 대두
 - 개정 아동복지법 적용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존재
 - 아동복지전달체계에 관한 규정 미흡 :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규정
 - 아동복지시설 규정의 보완 : 아동복지관 신설
 - 아동복지단체 지원에 관한 규정
 - 아동학대관련법의 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논의 보완
 - 아동학대특별법, 가정위탁특별법 등 일부 요구 존재

□ 아동복지전달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

- 아동복지전달체계의 단편성과 파편성 등의 매우 미흡
 -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복지전달체계의 모형설정의 필요성
 - 시군구의 희망복지센터에서의 아동정책의 전달체계 모형 없음
 - 아동관련 중앙 연구기관의 설립 필요성
 - 연구와 관련된 기능이 다양한 기관에 분산되어 수행됨 : 체계성이 미흡함
 - 아동국설치 필요성

- 노인, 장애인, 보육 등 대부분의 대상별 복지부 조직 국체제이나 아동만 2개과로 구성됨

○ 새정부의 아동관련 복지공약에서 드림스타트 확대에 따른 연계방안 모색 필요성

- 희망복지지원단, 내일행복지원단, 드림스타트 연계방안 모색

□ 방과후 아동보호체계 특성에 관한 국제비교연구

○ 학교내 돌봄서비스 강화에 따른 보호와 교육의 통합 가능성 대두

- 방과후 서비스가 학교에 집중될 가능성 존재
-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등의 기능과 역할의 조정방향에 대한 연구 필요

□ 아동복지서비스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

○ 아동복지서비스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미흡

- 아동학대, 가정위탁, 아동발달계좌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이러한 서비스의 효과성 논의는 시작되지 못하고 있음.
- 이러한 서비스의 효과성 논의가 시작되어야 함.

○ 아동복지시설의 개편방향에 대한 연구

-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대규모 보호시설에서 소규모 시설보호 및 가정 보호의 원칙에는 동의하나 개편방향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함
- 아동복지시설 개편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의 필요성 대두
- 이와 더불어 입양과 가정위탁과 공동생활가정이라는 보호체계의 방향성도 동시에 논의 필요함.

현안3

아동복지정책의 현안과 정책과제

(가톨릭대학교, 이상균)

1. 현황 및 문제점

□ 보편적 서비스시대에 따른 선제적인 아동복지정책의제 설정 필요

- 영유아기 보육비지원의 도입에서 출발한 보편적 아동복지는 아동기로의 확대가 불가피
- 다음은 무엇인가?(what's next?) : 아동복지확대에 따른 차기 정책과제의 선제적 논의 필요

□ 아동양육시설의 출구전략 부재

- 아동인구의 감소/가정의 보호(위탁가정, 공동생활가정) 증대에 따른 전통적 아동양육시설의 기여도 축소
- 아동양육시설의 다기능화 또는 기능전환이 최선의 대안인지에 대한 고민 필요
- 유럽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, 시설보호기능의 아동생애주기별 기능차별화 논의 필요
 - 영국(시설보호아동 14%), 덴마크(54%), 프랑스(38%), 독일(59%), 네덜란드(47%)
 -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발생 요보호아동 중 41.5%를 시설보호 배치

□ 아동복지서비스 이용시설의 부재

- 보편적 아동의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아동전문 전달체계의 부재: 저소득층 가족의 아동돌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, 드림스타트센터는 존재하나 선별적 복지체계에서의 작동기제일 뿐
- 대상의 보편성을 확보하면서 아동개인의 욕구에 대응하는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아동복지 전문서비스기관의 신설 필요

□ 서비스제공방식의 전환에 따른 대응전략 부재

- 공급자중심의 서비스에서 이용자중심의 서비스체계로 전환
- 2012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아동이 사업수 중 55.4%, 예산은 597억원(59.4%)를 차지함. 이 가운데 다문화가족사업을 포함하면 아동가족사업수의 비중은 59.3%, 예산비중은 62.9%로 늘어남.
- 가족과 아동의 욕구와 선택권에 기반한 개별화된 맞춤형서비스 개발 필요

□ 아동·청소년정책과 관련한 유기적이고 통합화된 컨트롤타워 부재

- 정부부처간 정책분담의 칸막이 현상 존재. 다문화가정 아동, 게임 및 스마트폰 중독문제.
- 정책수립단계(중앙정부조직)에서의 물리적 통합이 어렵다면, 지역단위에서의 아동청소년서비스를 통합전달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전달체계 필요

2. 향후 연구가 필요한 정책과제

- 아동기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의 구체성 확보
 - 영유아기, 아동전기, 아동후기별 대응필요도가 높으면서 정책효과가 높은 서비스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.
 - 현금이전, 전문적 서비스구매를 위한 바우처 제공, 양육 친화적 정책이 각 연령별(아동생애주기별)로 차별화된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 필요: early income is better or later is better?
 - 세분화된 아동생애주기별 핵심적 서비스 제공전략 수립 필요
- 아동양육시설의 출구전략에 대한 중장기적 정책과제 수립
 - 연령별/생애주기별 보호조치의 세분화전략 수립필요
 - 영유아기: 위탁가정보호 및 입양
 - 아동전기: 공동생활가정
 - 아동후기: 소숙사 및 유사소숙사 형태 양육시설
- 보편적 아동정책과 사회서비스 확대에 따른 신규정책제도 검토 및 운영 전략 수립
 - 이용자중심의 사회서비스 확대에 따른 보편성/전문성을 담보하는 신규 서비스영역의 개발 필요
 - 이혼/별거가족의 양육비 선지급제도 심층검토(Advanced Payment)
 - 단계별(층위별) 방어선에 따른 아동서비스 제공전략 개발
 - 1층: 보편적 양육서비스(부모돌봄 지원)
 - 2층: 전문적 성장서비스(부모돌봄 강화)
 - 3층: 요보호아동 보호서비스(부모돌봄 대체)

□ 저소득층 아동에 집중된 장기종단연구의 필요성

- 상대적 아동빈곤율 10.6%(중위소득 50%기준)에 달하지만 이들을 위한 정책 및 서비스 수립에 필요한 정교하고 고급의 정보를 담은 자료는 부재
- 종단적 패널자료는 최근 들어 많지만, 정책수립과 서비스효과를 검토할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찾기 힘들.
- 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청소년패널의 경우, 주관심사는 일반 청소년이며, 주된 설문조사내용 역시 복지정책과 무관한 경우가 많음.
- 드림스타트사업의 경우 효과성연구를 수행하나, 연간 3,000-5,000만원의 예산으로 20,000명의 아동자료를 수집하기에 낮은 품질의 자료수집에 그침.
- 한국복지패널의 경우 아동대상 질문은 3년마다 부가조사설문에서 처리
- 저소득층 아동을 주요 표적대상으로 삼은 종단적 심층자료의 확보가 필요
- 연령대별 서비스 효과성의 검토, 아동후기(10대 중후반) 빈곤아동의 빈곤탈피 또는 빈곤의 세대전승 고리에 대한 심층연구 가능

현안4

아동정책 현안과 정책과제

(이화여자대학교, 정익중)

1. 여건변화 및 전망

- '12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.30명으로 다소 상승하였으나, 출산율 하락추세 반전까지는 이르지 못한 상황
- 저출산 대책으로는 저출산 자체를 막기 위한 방안과 저출산의 향후 문제를 막기 위한 방안이 동시에 필요. 아동정책은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유일한 대책임.
 -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임. 이를 막기 위해서는 아이 키우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음.
 - 아동정책은 아동 개개인의 기본역량을 강화하여 인적자원의 고도화를 뒷받침하고, 취약위기아동에게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여 양질의 인적자본 형성과 미래 성장동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게 될 것임.
- 아동정책은 미래고용의 질을 고도화할 뿐만 아니라 여성고용의 증가와 유지를 위한 고용친화적 복지의 대표적인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임.
 - 괜찮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 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하고 괜찮은 일자리의 공급처로서 아동부문이 대두되고 있음.
 - 아동정책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아동서비스 제공인력의 고용 창출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업그레이드시키고, 이를 통해 미래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발굴하여 안정적 성장의 기초를 마련함으로써 고용-성장의 선순

환 구조를 확립할 수 있음.

- 미래고용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 전략이면서 괜찮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아동서비스 제공인력 확대전략이 될 수 있는 아동정책을 중심으로 그 방향성을 논의하려고 함.

2. 현황 및 문제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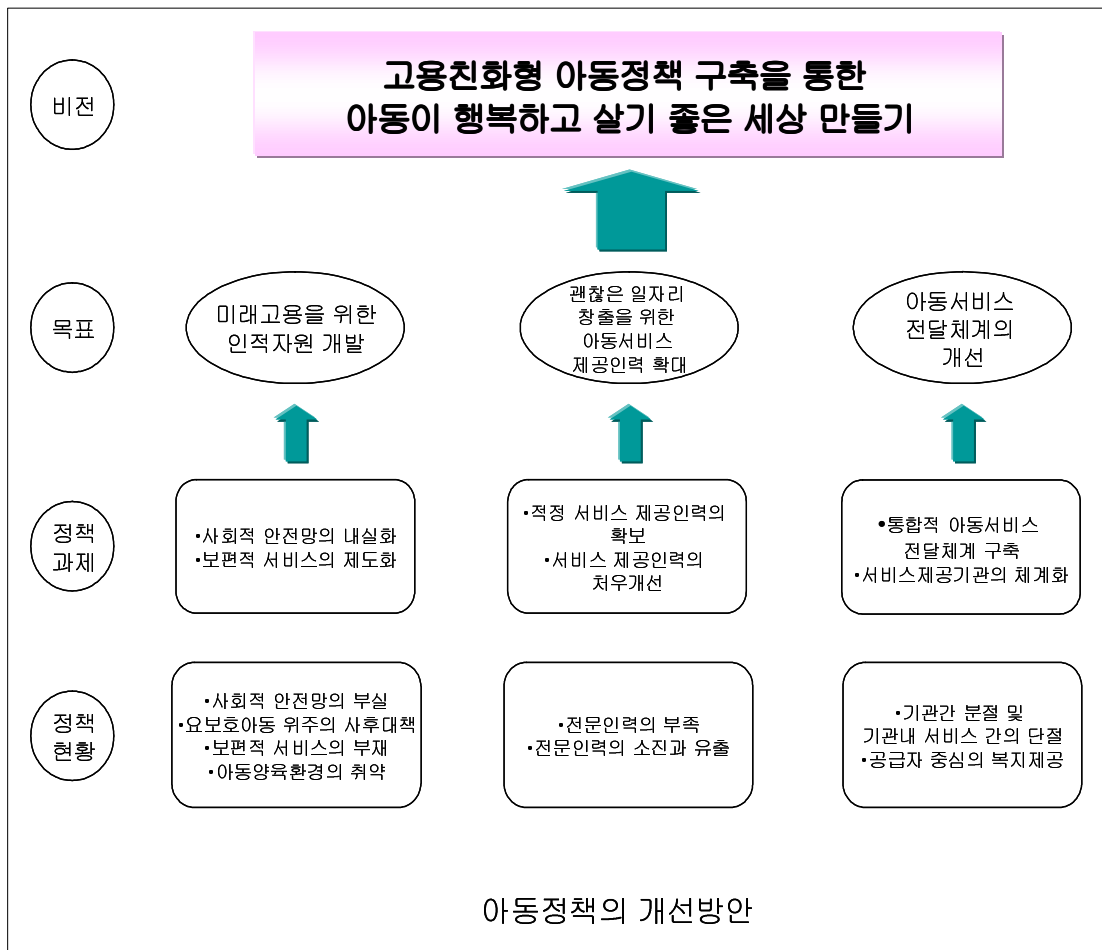
- 참여정부 이후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확대하는 단초를 마련하였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인프라가 부족하였음.
- 아동에 대한 새로운 정책추진으로 아동정책이 보편적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아동정책의 대부분이 요보호아동 중심의 선별적이고 사후대처적인 사업에 치중하고 있음.
- 가정해체의 증가, 빈곤의 심화 등으로 위기가 급증하여 아동에게 심리정서적 문제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.
-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어서 우리나라 아동 1인당 복지비 지출은 선진국의 1/7 ~ 1/10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었음.

3. 정책목표 및 방향

- 정책목표 : 미래의 우수한 노동력 확보를 위한 인적자원 개발과 괜찮은 일자리 창출과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

□ 정책방향

- 미래고용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, 괜찮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아동서비스 제공인력 확대, 아동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를 전개함.
-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그림과 같음.



4. 세부사업 개요

1) 미래고용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

□ 사회적 안전망의 내실화

- 가정외 보호(가정위탁, 시설, 그룹홈, 입양) 서비스의 내실화
- 아동 조기개입서비스와 방과후 프로그램의 체계화
- 부모교육의 강화
- 전문직업경로를 통한 직업역량 강화
- 지식직업경로를 통한 자립지원 강화

□ 보편적 서비스의 제도화

- 아동양육지원제도의 도입(가정방문, 일시돌봄지원)
- 아동수당제의 도입
- 건강의료 지원의 확대
-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확보
- 의무교육의 확대
- 교육복지의 제도화

2) 팬창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아동서비스 제공인력의 확대

□ 적정 아동서비스 제공인력의 확보

-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력교육에 대한 법적 강제 도입
- 아동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 개선

3) 아동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

-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위기가정 조기발견시스템 구축
- 아동청소년서비스 통합적 전달체계의 구축
- 서비스 제공기관의 체계화

현안5

아동정책 현안 및 정책과제

(서울신학대학교, 황옥경)

1. 현황 및 문제점

□ 낮은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정책대상자로서 ‘아동 소외’

○ ‘그 밖의 다른 존재’로 취급

- 가정에서부터 국가정책을 수립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아동이 성인과 다른 ‘그 밖의 다른’ 존재로 취급.
- 아동의 ‘다름’을 ‘차이’라거나 ‘보편적인 현상’, 그리고 ‘아동기의 특성’이라고 받아들이기 보다는 성인들의 ‘일반적인 기준’에 ‘미달’하는 것으로 이해
- 아동 지위의 불평등, 아동권리에 대한 낮은 인식

○ 아동친화적인 사회 환경, 기업환경 조성되지 않음

- 폭력적, 상품화, 성상품화, 안전을 위협, 자연환경 파괴 등

□ 정책 담당 부서의 이원화

○ 보건복지부와 여성부의 아동정책 중복

- **아동과 청소년의 연령 중복으로 인한 정책 중첩 및 상호교류의 부재**
- 이러한 양상이 지방정부 정책에도 고스란히 영향
- **정책 분절 우려**

○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두 부처로 분리되어 있는 행정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

○ 아동정책 및 서비스 관련 연구의 분산

□ 아동권리에 기반한 포괄적인 국가행동계획의 부재

-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(NAP)의 수립을 주목
- 그러나 아동권리에 기반한 포괄적인 국가행동계획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표명
 -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을 포괄하는 국가행동계획을 채택하고 이를 이행 할 것과 감시 기제를 비롯한 충분한 인적, 물적 자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
 - 보편주의에 기반한 다양한 영역의 국가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들 마련

□ 아동정책에 대한 국가 아젠다 취약 및 중앙정부 정책과 지방정부 정책간의 연계부족

- 아동정책에 대한 국가 아젠다 수립 취약으로 인해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 아동정책 실행의 제약
 -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결여 및 국가 인적자원 양성의 한계로 이어짐.
 - 발달주기별 국가 인적자본 양성을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방정부 정책과 연계될 때 지역간 편차를 줄일 수 있는 정책 실행 가능

□ 아동서비스 전달체계간의 연계 부족 서비스 경로의 부재

- 아동보호전문기관, 지역아동센터, 가정위탁지원센터, 드림스타트 등의 연계서비스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
- 아동/가족 위기관리 미흡, 응급 대응 부적절, 서비스의 중첩 등 문제

2. 향후 연구가 필요한 정책과제

□ 국가행동계획의 수립

- 아동정책에 기반한 국가행동 계획 수립과 점검
- 다양한 영역의 아동인재 양성 정책 수립 및 서비스 제공 방안 모색

□ 아동권리모니터링 센터의 독립성 및 예산 분배

- 아동권리모니터링 센터의 설립과 옴부즈퍼슨 활동이 민간위탁에 의해 운영
 -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독립성 제한, 예산 부족 등의 문제
 -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가 명확한 권한을 갖도록 센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어야 하고 옴부즈퍼슨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독립적, 기술적,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

□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재개 및 상시화

- 아동정책 운영위원회 운영재개를 위한 최근 움직임은 환영할 만함
- 다만, 아동정책 운영위원회의 운영이 연간 몇 차례 회의를 하는 형식적 수준이 아닌 운영의 상시화를 모색할 수 있어야 함
-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사무국 형태로 구성되어 운영을 상시화 할 수 있어야 하며 정책조정이 필요한 경우 그 업무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함

□ 지방자치단체에 따른 아동예산 할당

- 2005년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예산의 일부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.
 - 아동복지 관련 사업 중 9개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으며, 이들 9개 사업은 대부분 요보호 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예산
 - 이로 인해 지방 재정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아동정책 및 예산 할당에 따

라 동일한 요구를 가진 아동에게 상이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.

□ 정책 및 예산 영향 평가의 실시

○ 아동정책 영향 평가 및 예산 효과평가의 미실시

- 예산 수립과정의 투명성 및 참여제도 미흡
- 아동보호전문기관, 지역아동센터, 가정위탁지원센터, 아동발달계좌 등 서비스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·평가
-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예산 편성 분석 평가

□ 양육의 질 및 원가정 복귀 후 적응에 대한 평가

- 위탁가정, 일시보호, 쉼터 등의 양육의 질에 대한 정기점검의 체계화로 양육안전성과 우수성 확보
- 일시보호 등 종결 이후 원가정 복귀 이후 적응 및 재애착 과정 평가

□ 출생신고제가 아닌 출생등록제의 실시에 관한 연구

- 출생등록은 UN CRC 뿐만 아니라 UPR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짐
-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행정관청에서 아이의 출생 사실을 알기 힘들게 되어 있는 현재의 법률과 관행이 출생등록을 제공하기에 부적절
-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
 - 영국은 의료기관에서 36시간 내에 관계 당국이 출생사실을 알려야 함. 병원에 따라서는 병원 내에서 출생등록이 가능하도록 부스가 마련되어 있기도 함.
 - 아울러 부모가 관할 경찰서에 가서 직접 출생등록을 하면 출생등록증을 바로 발급.
 - 이중등록 제도(병원과 부모)

□ 학대와 방임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폭력의 재 개념화 피해 아동 적응에 대한 연구

○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아동학대와 방임이 협소하게 정의되어 있는 것을 우려

- 따돌림(bullying) 등이 확대되고 있는 데 이것이 아동학대의 범주에 포함되고 있지 않음
- 학대 피해 아동의 재활을 위한 지원 방안 모색

□ 아동권리교육 제도화 및 홍보 확대 방안

○ 아동권리교육은 아동권리 옹호활동

- 국가인권위원회, 정부산하 보건복지 인력개발원, 한국청소년상담원 등의 공공기관과 아동관련 민간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제도화되지 않음.
- 최소한 아동관련 기관의 종사자가 필수로 아동권리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
- 재교육과 자격취득후 연수과정에서 아동권리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함.

□ IT 기기 (스마트 폰, SNS 등)의 활용 실태 및 아동 생활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

○ IT기기 사용의 확대 및 이것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이한 보고들

○ 활용에 대한 지침 및 관련 정책 마련

- 관련 법률과의 조정(예:학생인권조례의 내용 등)